

성남 도시관리계획(분당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1. 성남 도시관리계획(분당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<http://eum.go.kr>)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2025. 10. 27.

성 남 시 장



가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대한 사항

1)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가) 학교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폐지	50	청솔 중학교	중학교	금곡동 124	15,396.6	감) 15,396.6	-	건교부고시 제410호 (’95. 12. 22)	

나) 변경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50	청솔중학교	○ 시설 폐지 - 위 치 : 금곡동 124 - 면 적 : 15,396.6㎡	○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따른 청솔중학교 폐지 확정 공고로 학교시설 폐지

2)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가) 분당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나) 분당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

(1) 용도지역·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·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
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(2)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(가) 공공·문화체육시설

① 학교시설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폐지	중15	청솔 중학교	중학교	금곡동 124	15,396.6	감) 15,396.6	-	건교부고시 제410호 (’95. 12. 22)	

② 변경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중15	청솔중학교	○ 시설 폐지 - 위 치 : 금곡동 124 - 면 적 : 15,396.6㎡	○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따른 청솔중학교 폐지 확정 공고로 학교시설 폐지

(3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

(가) 공공건축물

① 교육시설

기 정						변 경					
도면 번호	가구 번호	면적	획지 번호	획지		도면 번호	가구 번호	면적	획지 번호	획지	
				위 치	면 적					위 치	면 적
중15	중15	15,396.6	-	금곡동 124	15,396.6	교육1	교육1	15,396.6	-	금곡동 124	15,396.6

② 변경 사유서

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○ 중학교15 폐지 ○ 교육시설1 신설	○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따른 청솔중학교폐지 확정 공고(제2024-466호) 및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이전 재배치 계획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국제교육원 이전

(4)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
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

(가) 공공건축물

① 교육시설

☐ 기정

도면 번호	위치 (지번)	구분	계획내용	비고
중15	금곡동 124	용 도	중학교	
		건폐율	-	
		용적률	150% 이하	
		높이	5층 이하	
		배치	-	
		형태	-	
		색채	-	
		건축선	-	

☐ 변경

도면 번호	위치 (지번)	구분	계획내용	비고
교육1	금곡동 124	용 도	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(부대시설 포함), 학교	
		건폐율	-	
		용적률	150% 이하	
		높이	5층 이하	
		배치	-	
		형태	-	
		색채	-	
		건축선	-	

② 변경 사유서

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○ 허용용도 변경 (기정) 중학교 → (변경)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(부대시설 포함), 학교	○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이전계획에 따라 허용용도 변경

(5)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

(가)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

구분	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	비 고
기정	제4편 공공건축물 제3절 건축물에 관한 사항 제101조 (건축물의 용도) ① ~ ⑩ <생략>	
변경(안)	제4편 공공건축물 제3절 건축물에 관한 사항 제101조 (건축물의 용도) ① ~ ⑩ <생략> ⑪ 교육시설1 용지(금곡동 124번지)의 건축물 용도는 아래표에 따른다. (신설)	
	구 분	용도계획
	허용용도	·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(부대시설 포함), 학교

(6)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2) 지형도면 고시도: 도면게재 생략